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19.1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경영대학의 겸임교원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지침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비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 등) ① 비전임교원은 경영(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총장에게 임용을 추천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 및 재임용 최종평가결과와 심사대상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여부를 심의하며,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채용

제4조(신규채용절차) ① 신규채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추천 등의 순으로 한다.

② 학장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경영대학 홈페이지 게시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공개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규채용 제출서류) 신규채용 지원자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지원서<붙임 서식 1>
2. 졸업·학위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3.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자유 서식)
4.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력 포함, 해당자에 한하며 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5. 연구실적물(연구교원에 한함)

제6조(신규채용 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1. 서류심사(60점)
 - 가. 모집대상 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30점)
 - 나. 경력의 우수성(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15점)
 - 다. 활동계획(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15점)

2. 면접심사(임용적합성)(40점)

② 서류심사 결과 취득점수가 4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면접심사 점수는 4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1. 특별채용의 경우

2. 면접심사 대상자의 수가 채용분야의 채용인원 이하인 경우

제7조(심사위원) ① 제6조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학장은 학과장으로부터 채용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심사위원은 제6조에서 정한 항목 및 비중에 따라 평가하되, 심사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하며, 심사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제9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제8조에 따라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해당 비전임교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2절 특별채용

제10조(적용범위) 특별채용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1조(모집방법) 학과장은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학장에게 보고 한 후 특별채용 후보자를 다음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학과장은 특별채용 후보자 모집계획을 전임교원 전원에게 공지한다.

2. 전임교원은 특별채용 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학과장에게 추천한다.

3. 학과장은 특별채용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2조(채용절차)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특별채용 후보자의 채용절차는 제5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제3절 재임용

제13조(재임용 심사) ①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은 해당 임용기간 중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활동 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비전임 교원의 임무 실적(50점)

2. 비전임 교원의 임무 개선 노력(25점) : 강의 및 연구 내용 개선 노력, 재임용 후의 교육 · 연구 · 산학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그 밖에 교육, 연구, 산학협력과 관련된 활동 등(25점) : 임용 이후 총괄연구실적, 교내활동, 사

회활동, 봉사활동,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 대학등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그 밖에 수상, 서훈, 표창 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가능(5점)

②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

③ 학과장은 제7조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에게 비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활동을 평가 의뢰하며, 취득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학장에게 추천하며, 학장은 해당 비전임교원을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그 밖의 사항) 경영대학의 비전임 교원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서 이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19.11.27.>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부지침 시행에 따라 「객원교원 임용 추천 기준」, 「경영대학 산업체 겸임교수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세부지침은 2019년 12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비전임교원(해당 비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